

대전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12006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12006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1023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변경 전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로스

담당변호사 김학민, 이영섭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울

담당변호사 서경수, 정필규

변론 종결2022. 11. 23.

판결 선고2023. 1. 11.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1023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원고의 전 대표이사 D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D가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이다. 또한 상법 제398조에 따라 D가 미리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D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고,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갑 1-2, 5호증, 을 3-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D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경영관리팀 담당자가 2020. 3. 24. 작성한 품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터키에서 설립된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회사에 제작·판매하기로 약정한 파쇄시설 중 부대설비 제작 부분을 피고 회사에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E의 대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29.경 원고 측에 이메일로 '2019년 무렵 원고와 시설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상 파트너로서 위 시설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주었다.

② 원고는 원고와 E가 체결한 파쇄시설 제작·판매 계약의 대금 규모가 100,000달러에 불과한데도, 하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그보다 7배 이상 많은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허위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가 2019. 12. 5.경 원고와 체결한 자문계약서(Consulting Agreement, 을 1호증) 제4호에 의하면, 원고가 E에 E가 중국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열분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컨설팅 등을 해주는 대가로 10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00,000달러는 원고 주장과 달리 E가 2019년도에 원고와 체결한 자문 계약과 시설 제작·판매계약 중 컨설팅 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 사건 계약은 2020. 4. 1.자로 체결되었다. 피고는 2020. 2. 27. 옥천군 F, G에 있는 공장용지 3,302㎡와 지상 652.71㎡ 규모의 창고를 임차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임차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부동산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2020. 4. 10.까지 사업 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월 차임을 받지 아니하며 이후 매월 1일자로 선불로 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체결일과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사업 개시일이 매우 근접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위 토지와 창고까지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2020. 5. 12. H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한 부대설비의 설계비 제작에 59,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H는 2020. 7. 10.경 위 부대설비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대설비 제작을 위한 설계도까지 작성된 상태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65,000,000원이 지급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매월 피고가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되는 구조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71,500,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부대설비 제작 공정을 위해 토지와 창고를 임차하고 설계도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므로, 피고가 위 설계도 작성 외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D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이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가) 상법 제39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사 또는 제54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정하고 있다.

나)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상법 제39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서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갑 18~20호증, 을 7,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법원의 영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주, 출자좌수,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	5,000	50%
J	4,500	45%
K	500	5%
합계	5,000	100%

② 원고는 D가 사촌인 I을 통해 피고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와 I이 사촌관계라거나 D가 I의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에 출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D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I이 원고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추단하기 부족하다.

③ D와 K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J, K 명의의 피고 주식은 D가 아닌 당시 원고의 대주주이던 L가 이들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였던 주식으로 보이는데, D가 L와 공동으로 위 J, K 명의의 피고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D가 피고의 2019년 11월, 2020년 4월, 2020년 5월분 자금지출 내역 등을 당시 원고의 경리담당자인 M로부터 보고받은 점을 근거로 D가 피고를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7, 8호증에 비추어, 이와 같은 보고는 피고 주식을 J, K 등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주주인 L에 대하여 피고의 영업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D가 피고의 자금지출내역을 일정기간 보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상당수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소극) 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조건에 의하면 피고의 제출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의 전 대표자인 D가 공사완료 전에 계약이행증권을 면제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공사금액 전액 수령 후에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미제출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4. 1.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1,500,000원을 수령한 후, 2020. 4. 10.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옥천군 F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 건물을 임차하였고, 2020. 5. 12. H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한 부대설비의 설계비 제작의 견적을 받은 다음, 2020. 7. 10.경 설계도 제작까지 완료하였다. 공사대금 중 중도금 80%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월 기성청구를 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 내용, 현재까지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까지만 작성한 사실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선용

판사최리지

판사강병하